

알기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⑩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안내서

알기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10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

알기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⑩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안내서

발 간 등 록 번 호
11-1480592-001520-0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안내서

본 자료는 국내 이용자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유전자원 접근 신청 시 참고용으로 발간되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전자원 접근 신청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1장 남아프리카공화국 동향	1 생물다양성 현황	06
	2 ABS 정책 현황	06
	3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현황	07
	4 주요 용어정의	10
2장 유전자원 접근절차 개요	1 유전자원 접근절차 승인대상	16
	2 유전자원 접근절차	20
	3 공통사항	48
3장 남아프리카공화국 유전자원 접근신청 이후 절차	1 유전자원 접근신청 이후 절차	70
	2 유전자원 관련 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 변경	72
	3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 발급	72
	4 국내 이행준수 절차	74
4장 결론	1 남아프리카공화국	80
부록	부록 1 남아프리카공화국 ABS 관련 법률 : 생물다양성법(2004)	84
	부록 2 남아프리카공화국 ABS 관련 법률 :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규정 (2015)	85

◆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용어
• NEMBA : 2004년 생물다양성법(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iodiversity Act, 2004)
• BABS : 2015년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규정(Regulations on 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 2015)
• DEA :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 MEC : 생물다양성보전을 책임지는 주 집행위원회 소속 위원(Member of the Executive Council for environmental affairs)
• IBR : 토착생물자원(Indigenous Biological Resources)
• MTA :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s)
• BSA : 이익공유계약(Benefit Sharing Agreements)
• CITES :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TOPS : 멸종위기종 또는 보호종(Threatened Or Protected Species)
◆ 나고야의정서 관련 용어
• CBD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diversity)
• 나고야의정서 :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BD)
• 유전자원법: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내 이행법률
• ABS :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 ABS는 통상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를 의미
• PIC :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 * 나고야의정서 6조와 7조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자는 제공국의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 제공국으로부터 사전통고승인을 받아야 함
• MAT :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 나고야의정서 5조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자는 그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자)과 공평하고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익은 이용자와 제공국 간 체결되는 상호합의조건에 명시되어야 함

I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향

1. 생물다양성 현황	06
2. ABS 정책 현황	06
3.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현황	07
4. 주요 용어 정의	10



생물다양성 현황

-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브라질, 인도네시아에 이어 전세계 생물다양성 3위의 국가임
-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특히 세계 식물자원의 10%가 자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식물다양성 순위 5위를 차지하고 있음¹⁾
 - 전 세계 식물종의 10%, 파충류, 포유류, 조류의 7%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이종은 약 16,000종, 멸종위기에 직면한 희귀종은 2,200여종에 이룸²⁾
- ◆ 남아프리카공화국 식물자원에 대한 DNA 은행이 마련되어 있음
 - DNA 은행은 Kirstenbosch에 위치해 있으며 영국의 다윈이니셔티브로부터 재원을 공급받고 있음
 - DNA 은행은 약 2,200종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자생식물 유전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 및 응용연구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에게 식물자원의 유전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활용한 기술개발의 성과를 공동으로 분배하는 협약체결, 생물자원의 이송에 관한 법률적 규약들을 이행하는 것 역시 지원하고 있음

ABS 정책 현황

1. 국제적 조치

-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유전자원 다양성 부국국가그룹(Like Minded Mega diverse Countries, LMMC)의 회원국으로 ABS 레짐 협상의 결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포괄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ABS 규범의 성립 및 파생물(derivatives)과 상품(products) 모두 ABS 범위에 포함하도록 요구
 - 또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WIPO IGC)에서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출원 시 생물학적 재료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원산지 국가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1) 특허청, 「해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효과적 이용방안 및 합리적 국제 보호방안」, 2009, 8~11면.

2) 현병환, 해의 생물소재 센터구축 및 활용사업을 위한 사전 정책기획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06.2.17, 123면.

2. 국내적 조치

- ◆ 2012년 1월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제 체계: 제공자, 이용자 및 규제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 (South Africa’s 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 Regulatory Framework: Guidelines for Providers, Users and Regulators)”을 발간
 - 위 지침을 통하여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와 제공자 사이에서 법적인 요건 및 권리들에 대하여 기본 원칙을 제공함³⁾
 - 그러나, 2015년 5월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규정(Regulations on 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이 개정되면서 위 지침의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 시 유의해야 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현황

1.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령

1) 생물다양성법(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iodiversity Act, 2004)

-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04년 6월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일반법인 ‘생물다양성법(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iodiversity Act, 이하 “NEMBA법”)’을 제정함
 - NEMBA법은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생물다양성의 탐사를 규제하고 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NEMBA법은 특정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물질이전 및 이익공유의 요건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생물탐사 신탁기금을 설립하며, 특정 활동이나 토착생물자원의 법률 면제를 제공함
 - NEMBA법에 따르면, 그 누구도 허가 없이는 토착생물자원과 관련된 생물탐사의 상업화 단계에 관여하거나 생물탐사나 연구를 위한 토착생물자원을 수출할 수 없음
 - 또한 상업적 목적인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기 이전에는 원주민의 유전적, 생물학적 자원과 관련된 생물탐사의 발견 단계에 관여할 수 없으며, 발견 단계에서 생물탐사에 관련된 사람이 이를 이용한 상업화 단계에 도달하는 경우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함

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모델 개발, 2012, 174면.

Table 2-1 남아프리카공화국 NEMBA법의 주요 내용

조항	내용
제1~9조	정의, 목적, 적용범위 등
제10~36조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 생물다양성 기관
제37~50조	생물다양성 계획 및 통제
제51~63조	위협 또는 보호받는 생태계 및 생물종
제64~79조	생물다양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
제80~86조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제87~96조	사전통고승인 절차
제97~100조	이 법의 집행
제101~102조	벌칙
제103~106조	기타 조항

2)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규정(Regulations on 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 2015)

-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NEMBA법의 하위 규정으로서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on 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 이하 “BABS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BABS규정은 생물탐사 목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 시 NEMBA법에 따른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음
- ◆ BABS규정은 2015년에 개정되어 같은 해 5월 19일 발효됨
- BABS규정이 개정되면서 생물탐사의 발견 단계에서의 신고 절차 및 생물탐사가 아닌 다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토착생물자원의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됨
- 또한 물질이전 및 이익공유 협정의 형식과 내용, 요건 및 기준, 생물탐사 신탁 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도 추가됨

Table 2-2 남아프리카공화국 BABS규정의 주요 내용

조항	내용
제1~3조	정의, 목적, 적용범위
제4~11조	허가 담당 기관
제12~37조	생물탐사 및 그 외 연구에 대한 허가 절차
제38~40조	물질이전계약, 이익공유계약 및 생물탐사 신탁 기금
제41~43조	일반 문제
제44~46조	경과 규정

2.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담당기관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ABS 담당기관과 그 역할 및 기능

남아프리카공화국 ABS 담당기관과 관련 정보

담당기관	역할과 기능
환경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 나고야의정서 국가연락기관 * 국가연락기관은 나고야의정서 13.1조에 따라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에 대한 PIC과 MAT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 수행
	• 나고야의정서 국가책임기관 * 국가책임기관은 나고야의정서 13.2조에 따라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 승인 및 MAT 체결 임무 담당

1. 토착생물자원 및 생물탐사, 생물무역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CBD에서 규정하는 협의의 유전자원보다 광범위한 “토착생물자원(indigenous biological resources, 이하 IB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유전자원 접근과 관련하여 “생물탐사(bio-prospecting)”, “생물무역(biotrad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 토착생물자원(IBR)⁴⁾

- 토착종의 파생물 혹은 유전물질을 포함한, 토착종의 살아있거나 죽은 동물, 식물 또는 그 밖의 생물체
- 포함되는 것 :
 - (i) 야생에서 얻어지거나 다른 출처로부터 접근된 토착생물자원으로, 재배, 사육, 경작되거나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재배 또는 변형된 토착종의 동물, 식물 또는 그 밖의 생물체
 - (ii) 위 (i)에서 언급된 토착종의 동물, 식물 또는 그 밖의 생물체의 품종, 변종, 스트레인, 잡종 혹은 생식 가능한 형태
 - (iii) 야생에서 얻었거나 그 밖의 출처에서 접근한 위 (i) 또는 (ii)에서 언급한 토착종의 동물, 식물 또는 그 밖의 생물체에서 발견되는 유전물질 또는 화합물을 가지고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변형된 외국의 동물, 식물 또는 그 밖의 생물체
- 제외되는 것 :
 - (i) 인간 기원의 유전 물질
 - (ii) 위 (iii)에서 언급한 외국의 동물, 식물 또는 그 밖의 생물체를 제외한 그 밖의 외국의 동물, 식물 혹은 다른 생물체
 - (iii)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의 부속서에 열거된 토착생물자원
- 예시 : 동물, 식물 또는 토착종의 기타 유기체

※ 우리나라 용어와의 비교

유전자원(「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

4) 남아공 환경부저, 국립생물자원관 역, 남아공의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제 체계, 2015, 84면.

◆ 생물탐사(Bioprospecting)

- 생물탐사는 토착생물자원(IBR)을 상업적 또는 산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착생물자원을 연구, 개발, 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함
 - (a) 연구, 개발 또는 응용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자원의 체계적인 검색, 수집 또는 수집 또는 추출
 - (b) 토착생물자원의 전통적인 사용에 관한 정보의 연구나 개발을 위한 활용
 - (c) 상업적 또는 산업적 이용에 대한 연구, 또는 그러한 전통적인 용도의 적용, 개발 또는 수정

◆ 생물무역(Biotrade)

- 생물무역은 생물다양성에서 유래한 제품들의 상업적 수집, 프로세싱, 판매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의미하며, 이는 종종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 기준과 관련이 있음

2. 생물탐사의 단계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상업적 목적인 경우 생물탐사의 진행 단계를 발견 단계와 상업화 단계로 구분한 다음, 토착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접근 시 각 단계에 따른 허가/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물탐사의 발견 단계(Discovery phase)

- 생물탐사 프로젝트에서 모든 실제적 또는 잠재적 상업 또는 산업적 이용의 성격 및 정도가 아직 상업화 과정에 들어가기에는 분명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의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이용

◆ 생물탐사의 상업화 단계(Commercialisation phase)

- 생물탐사 프로젝트에서 모든 실제적 또는 잠재적 상업 또는 이용의 성격 및 정도가 상업화 과정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경우의 생물탐사 단계
- ‘상업화로 보이는 활동들에는 지식재산출원, 임상시험 착수, 제품 개발, 또는 토착생물자원의 증식이 포함됨

3. 이해당사자와 토착공동체

◆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령에서는 ‘제공자(Provider)’를 가리킬 때 ‘이해당사자(Stakeholder)’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 중 ‘토착공동체(Indigenous community)’라는 개념을 사용함

◆ 이해당사자(Stakeholder)

- 이해당사자는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개인, 국가 기관 또는 공동체 기구, 또는 제한된 생물탐사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생물탐사를 위해 이용되는 토착생물자원의 전통적인 이용 방식 또는 전통지식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토착생물자원을 발견한 토착공동체 또는 특정 개인을 의미

◆ 토착공동체(Indigenous community)

- 리더십 구조를 가지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특정 지리적 영역에 살거나, 그 지리적 영역에서 권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음
 - 허가 신청과 관련된 토착생물자원의 전통적 이용이 제안된 생물탐사 활동에 기여하거나 일부가 되는 토착공동체
 - 허가 신청과 관련된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지식 또는 발견이 제안된 생물탐사활동에 이용되는 토착공동체

4. 물질이전계약과 이익공유계약

-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토착생물자원의 이해당사자와 이용자 간 물질이전계약과 이익공유계약을 각각 체결하도록 하고, 각 계약서에 규정되어야 하는 내용 및 계약서 서식을 BABS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

- 토착생물자원의 이전과 같은 물질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유전자원의 이해당사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체결되는 계약

◆ 이익공유계약(Benefit Sharing Agreement)

- 토착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
-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II

유전자원 접근절차 개요

1. 유전자원 접근절차 허가대상	16
2. 유전자원 접근절차	20
3. 공통사항	48



-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외국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유전자원/전통지식에 접근하거나 또는 상업적/비상업적 목적으로 유전자원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역 외로 반출하려고 할 경우 그 절차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음
- ◆ 외국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통하여 기존에 이미 허가받은 유전자원/전통지식에 접근하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과 공동으로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절차를 신청해야 함
- ◆ 따라서 국내 이용자 입장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유전자원/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통하여 접근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본 가이드라인은 이를 위한 기초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음

1절

유전자원 접근절차 허가대상

1. 허가/신고를 요하는 행위

- ◆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NEMBA법 제81조 (1)항)
 - 모든 토착생물자원 관련 생물탐사에 관여하는 것
 - 목적을 불문하고 모든 토착생물자원을 남아프리카공화국 외로 수출하는 것
- ◆ 허가/신고를 요하는 구체적 행위(BABS규정 제3조)
 - 상업적 부문/산업에서 생물무역 또는 약품, 대체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산업 효소, 식품향미강화제, 향수, 화장품, 유화제, 올레오레진(Oleoresin), 색상, 추출물 및 정유를 개발하기 위해 토착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것
 - 상업적 부문/산업에서 생물무역 또는 약품, 대체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산업 효소, 식품향미강화제, 향수, 화장품, 유화제, 올레오레진, 색상, 추출물 및 정유를 개발하기 위해 토착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것
 - 비영리 분야에서 과학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밖으로 토착생물자원을 수출하는 것

2. 허가/신고 신청자

-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 절차에 따른 허가/신고는 다음과 같은 자만이 할 수 있음 (BABS규정 제12조)
 - 남아프리카공화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민 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영주권자인 자연인
 - 외국 법인 또는 외국 국적의 자연인인 경우 위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신청 가능함
- ◆ 즉, 외국인은 단독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 절차에 따른 허가/신고를 할 수 없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인 또는 자연인과 공동으로 진행해야 함
- … 내국인에게 허가/신고 대행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

3. 허가/신고 유형

-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 절차는 상업적/비상업적 목적인지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상업적 목적인 경우 생물탐사 발견 단계인지 또는 생물탐사 상업화 단계인지 따라 구분되어 있음
- ◆ (상업적 목적) 남아프리카공화국 토착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허가/신고 유형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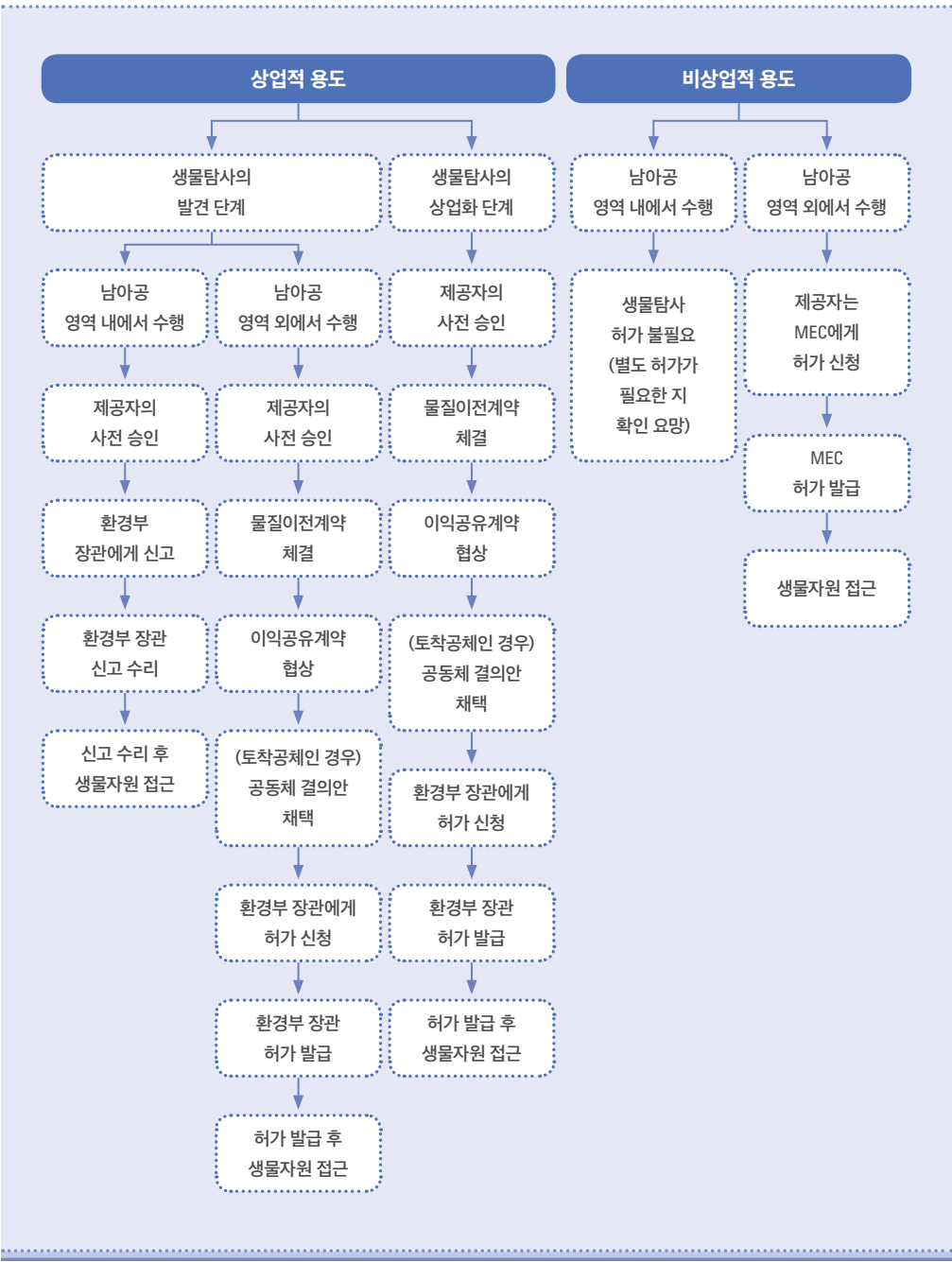
행위	허가/신고	담당 기관
생물탐사 발견 단계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수행하는 생물탐사 발견	발견 단계 신고 (Discovery Phase Notification)	환경부 장관
남아프리카공화국 외에서 수행하는 생물탐사 발견	발견 단계 수출 허가 (Discovery Phase export permit)	환경부 장관
생물탐사 상업화 단계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외에서 수행하는 생물무역	생물무역 허가 (Biotrade permit)	환경부 장관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외에서 수행하는 생물탐사	생물탐사 허가 (Bioprospecting permit)	환경부 장관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외에서 수행하는 생물무역 및 생물탐사의 복합 이행	생물무역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 (Integrated Biotrade and Bioprospecting permit)	환경부 장관

◆ (비상업적 목적) 남아프리카공화국 토착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허가/신고 유형은 다음과 같음

행위	허가/신고	담당 기관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수행하는 생물탐사 외의 연구	생물탐사 허가가 불필요하나, 관련 기관의 수집 및/또는 연구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관련 지방 또는 정부 기관
남아프리카공화국 외에서 수행하는 생물탐사 외의 연구	생물탐사 외의 연구를 위한 수출 허가 (Export permit for research other than bioprospecting)	MEC(생물다양성보전을 책임지는 주 집행위원회)

4. 허가/신고 절차 흐름도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전자원/전통지식에 접근하기 위한 절차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1. 발견 단계 신고(DISCOVERY PHASE NOTIFICATION)

- ◆ 남아프리카공화국 영역 내에서 토착생물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포함하는 생물탐사의 발견 단계에 중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 장관에게 이를 신고해야 함
- 신고 시, BABS규정 부속서 1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토착생물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에 관하여 이 해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를 첨부해야 함

- 관련 법령 : BABS규정 제13조

- 허가/신고 여부 :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

- 제출서류 :

서류	서식
생물탐사 발견 단계 신고서	BABS규정 부속서 1
이해당사자의 사전동의서	(서식 없음)

- 수수료 : 없음

※ 외국인은 해당 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인 또는 자연인과 공동으로 신고해야 함

발견단계 신고서(DISCOVERY PHASE NOTIFICATION FORM)

SECTION A: 생물탐사 발견단계 세부사항

1. 신고인 성명

2.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까?

Y

N

3. 2번 문항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4. 2번 문항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해당 국가명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국가

법인등록번호

5.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담당자 성명	
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6. 신고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											
여권 번호											
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7. 관계 법인이 있습니까?

Y	N
---	---

8. 7번 문항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 해당 법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시오.

법인명											
담당자 성명											
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SECTION B: 생물탐사 발견단계 세부사항

9. 생물탐사 프로젝트 책임자

성명											
여권 번호											
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10. 프로젝트 제안서 (첨부)

10.1. 생물탐사 프로젝트 발견 단계에서의 제목

--

10.2. 생물탐사 프로젝트 발견 단계에서의 목적

--

10.3. 연구 방법

--

10.4. 일정

시작일		종료일	
-----	--	-----	--

11. 토착생물자원

11.1. 접근하고자 하는 토착생물자원

생물 유형	일반명 / 속명 / 종명	수량	형태	접근 위치	보존 상태
Example: Plant	Asphodelaceae Aloe ferox Cape Aloe / Bitter Aloe / Red Aloe / Tap Aloe	6 kg	Crystals	Albertinia Western Cape 34,11° S 21,35° E	CITES Appendix II

12. 사전 허가

12.1. 토착생물자원과 관련하여 획득/적용된 사전 허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수집/수확		수출		수입		토지소유자 허가	
CITES ⁵⁾		TOPS ⁶⁾				전통지식 보유자 동의	

생물 유형	수입/수출 지역 (해당하는 경우 기재)	담당 기관	허가 번호	발급일	만료일

13. 생물탐사 프로젝트 후원인

13.1. 생물탐사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인 또는 외국인이 있습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인	Y	N
외국인	Y	N

13.2. 후원인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

성명		
담당자 성명		
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14. 전통 지식

14.1. 해당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이 있습니까?

Y	N
---	---

14.2. “예”라고 대답한 경우, 전통지식에 대한 세부내용을 기재하십시오.

--

SECTION C: 서명

생물다양성법(NEMBA)에 따라 생물탐사 상업화 단계에 이를 경우 허가 요건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아래와 같이 서명하십시오.

I, _____

나 (본인 이름)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에 관하여 약속한다 : _____

해당 프로젝트가 상업화 단계에 들어갈 경우, 나는 환경부에 통보하고 생물탐사 프로젝트의 상업화 단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것이다.

나는 생물다양성법(NEMBA) 제82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상업화 단계에서 생물탐사 허가 신청에 이해당사자가 서명한 이익공유 및 물질이전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C	C	Y	Y	M	M	D	D
프로젝트 책임자 서명	소속	날짜							

필요한 경우, 법인의 보증 서명을 추가하십시오.

		C	C	Y	Y	M	M	D	D
법인명	대표자 서명	날짜							

5)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6) 멸종위기종 또는 보호종(Threatened Or Protected Species).

2. 발견 단계 수출 허가(Discovery Phase export permit)

- ◆ 남아프리카공화국 영역 외에서 상업적 연구를 위한 생물탐사를 위해 토착생물자원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발견 단계 수출 허가(Discovery Phase export permit)를 받아야 함
- 허가 신청 시, BABS규정 부속서 2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생물탐사 발견 단계 신고서, 해당 토착생물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에 관하여 이해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 신청자와 이해당사자 간 작성한 물질이전계약서 및 이익공유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BABS규정 부속서 4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일단 납부하면 환불되지 않음

- 관련 법령 : NEMBA법 제81조 및 BABS규정 제14조
- 허가/신고 여부 :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허가
- 제출서류 :

서류	서식
허가 신청서	BABS규정 부속서 2
생물탐사 발견 단계 신고서	BABS규정 부속서 1
이해당사자의 사전동의서	(서식 없음)
물질이전계약	BABS규정 부속서 11
이익공유계약	BABS규정 부속서 12

- 수수료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인 또는 자연인인 경우 R50,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인 또는 자연인이 아닌 경우 R100
- BABS규정 부속서 4 참고

※ 외국인은 해당 허가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인 또는 자연인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

◆ 허가 신청서 서식

허가 유형(해당 항목에 표시)

신규			
갱신		허가 번호	
변경		허가 번호	

신청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1-5 문항에 답하십시오.

1. 신청인 성명

2.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까?

Y N

3. 2번 문항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4. 2번 문항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해당 국가명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국가	
법인등록번호	

5. 법인 정보

법인명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6. 담당자 정보(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첨부)

성명											
직책											
여권 번호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 7-9 문항에 답하시오.

7. 신청인 정보

성명											
여권 번호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8. 신청인이 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Y	N
---	---

9. 8번 문항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 해당 법인 정보를 기재하시오.

법인명											
담당자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프로젝트 책임자

10. 프로젝트 책임자 정보

성명											
여권 번호											
국적											
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토착생물자원 수취인(수입자)

11. 수취인/수입자 정보

성명											
여권 번호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수출의 목적

12. 토착생물자원을 수출하는 목적을 기재하시오.

--	--	--	--	--	--	--	--	--	--	--

토착생물자원(발견단계 신고서에 기재된 수량과 다를 경우 기재)

13. 해당 토착생물자원에 관한 상세정보를 기재하십시오.

생물 유형	일반명 / 속명 / 종명	수집되는 부분	수출 수량 및 형태	수출 및 수입하는 장소
Example: Plant	Aloe ferox	Leaves	6 kg, Crystalss	OR Tambo International Airport, London Heathrow International Airport

이해당사자

14. 모든 (공동 토지 소유자/국가 기관/민간 토지 소유자)와 전통지식 보유자(토착 공동체/개인/기관 또는 전통 치료사, 시술자의 조직)에 관하여 기재하고, 프로젝트 세부 사항 및 허가된 사전 동의의 완전한 증거와 함께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접근 이해당사자

계약서 체결 여부	MTA		BSA	
이해당사자 성명				

접근 이해당사자

계약서 체결 여부	MTA		BSA	
이해당사자 성명				

전통지식 보유자

계약서 체결 여부	MTA		BSA	
이해당사자 성명				

전통지식 보유자

계약서 체결 여부	MTA		BSA	
이해당사자 성명				

수수료

Departmental Bank Account ABSA Bank Account number: 1044240072 ACCOUNT TYPE: CURRENT Swift Account : ABSA ZAJJ CPT (OUTSIDE SA) REFERENCE NUMBER: 00946420 & Depositors Details (i.e. your full name and/or company etc.)		Pretoria South Africa Branch code : 632005
R50 수수료 납부 여부		
예		아니오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 영수증 첨부)		

서명

		C	C	Y	Y	M	M	D	D
프로젝트 책임자 서명	소속	날짜							

필요한 경우, 법인의 보증 서명을 추가하십시오.

		C	C	Y	Y	M	M	D	D
법인명	대표자 서명	날짜							

3. 생물무역 허가(Biotrade permit))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물무역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생물무역 허가(Biotrade permit)를 받아야 함

- 생물무역 허가는 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토착생물자원의 수출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허가 신청 시, BABS규정 부속서 5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해당 토착생물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에 관하여 이해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 신청자와 이해당사자 간 작성한 물질이전계약서 및 이익 공유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 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NEMBA법 제82조 (4)(b)에 따라 이러한 합의를 위한 협상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환경부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음
- BABS규정 부속서 4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일단 납부하면 환불되지 않음

- 관련 법령 : NEMBA법 제81조, BABS규정 제16조
- 허가/신고 여부 :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허가
- 유효기간 : 최대 5년
- 제출서류 :

서류	서식
허가 신청서	BABS규정 부속서 5
이해당사자의 사전동의서	(서식 없음)
물질이전계약	BABS규정 부속서 11
이익공유계약	BABS규정 부속서 12

- 수수료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인 또는 자연인인 경우 R500~1,500,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인 또는 자연인이 아닌 경우 R7,000
 - BABS규정 부속서 4 참고
- ※ 외국인은 해당 허가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인 또는 자연인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

◆ 허가 신청서 서식

신청 허가 유형(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십시오)

	신규	갱신	변경
생물무역 허가(Biotrade permit)			
생물탐사 허가(Bioprospecting permit)			
생물무역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 (Integrated Biotrade and Bioprospecting)			
갱신 또는 변경인 경우, 경과 보고서를 첨부하십시오.			
생물무역 허가 보유자로부터 토착생물자원을 제공받는 2차 거래자인 경우, 생물무역 허가 보유자의 서면 동의서를 첨부하십시오.			
이전 허가 번호			
수출 등록 번호			
부가가치세 등록 번호			

A. 신청인

1. 신청인 정보

성명													
직책													
여권 번호(여권사본첨부)													
국적													
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2. 신청자가 법인이거나 법인 소속의 사람입니까?

Y	N
---	---

3. 2번 문항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 해당 법인 정보를 기재하시오.

법인 설립 국가																			
법인명																			
담당자																			
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B. 공동 연구자

4. 공동 연구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시오.

성명										
여권 번호(여권사본첨부)										
국적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성명											
여권 번호(여권사본첨부)											
국적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C. 발견 단계 생물탐사

5. 해당 토착생물자원과 관련하여 생물탐사 발견 단계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Y	N
---	---

6. 발견 단계 신고 번호

[illegible]

7. 생물탐사 발견 단계 결과에 관하여 요약하여 기재하시오. (첨부)

8. 신청인이 생물탐사 발견 단계 담당자가 아닌 경우, 담당자 정보를 기재하시오.

성명		
직책		
국적		
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D. 토착생물자원

9. 토착생물자원

학명 / 일반명	이용하는 부분	물리적 형태	수량	소재지	전통지식 (Y/N)
Aloe ferox Bitter aloe	Sap from leaves	Crystals	100 kg	Mosselbay	

E. 기타 허가 신청

10. 이 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토착생물자원과 관련하여 이전에 또는 동시에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 (예: CITES, TOPS)에 대한 다른 허가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Y	N
---	---

11. 10번 문항에서 “예”라고 답변한 경우, 아래 표에 해당 허가증에 관하여 기재하고 발급된 허가서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허가	√	참조 번호	담당 기관
CITES			
TOPS			
Phyto-sanitation			
(더 있는 경우 추가 기재)			

F. 이해당사자

12. 모든 이해당사자(공동 토지 소유자/국가 기관/민간 토지 소유자)와 전통지식 보유자(토착 공동체/개인/기관 또는 전통 치료사, 시술자의 조직)에 관하여 기재하고, 프로젝트 세부 사항 및 허가된 사전 동의의 완전한 증거와 함께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접근 이해당사자

계약서 체결 여부	MTA		BSA	
이해당사자 성명				

접근 이해당사자

계약서 체결 여부	MTA		BSA	
이해당사자 성명				

전통지식 보유자

계약서 체결 여부	MTA		BSA	
이해당사자 성명				

전통지식 보유자

계약서 체결 여부	MTA		BSA	
이해당사자 성명				

G. 전통지식

13. 토착생물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내용을 설명하십시오. (구두 또는 문서)

H. 사업 계획 또는 프로젝트 요약

14. 사업 계획에 관하여 기재하십시오.

14.1. 프로젝트 제목

14.2. 프로젝트 목적

14.3. 생물무역/생물탐사/생물무역 및 생물탐사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얻으려는 결과

14.4. 연구방법 및 일정

14.5. 생물무역/생물탐사/생물무역 및 생물탐사 통합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생물다양성 보존의 이점

14.6. 생물무역/생물탐사/생물무역 및 생물탐사 통합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발전의 이점

14.7. 생물무역/생물탐사/생물무역 및 생물탐사 통합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공익

14.8. 토착생물자원의 수집 및 상용화가 자연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14.9. 위 14.8문항에서 답한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방법

14.10.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재료의 처리 방법

I. 토착생물자원 수취인

15. 거래 또는 수출되는 토착생물자원 수취인 정보

수령인 성명				
수령지 (국내 또는 해외)				
관련 계약서 (서명된 계약서 첨부)	MTA		BSA	

수령인 성명				
수령지 (국내 또는 해외)				
관련 계약서 (서명된 계약서 첨부)	MTA		BSA	

수령인 성명				
수령지 (국내 또는 해외)				
관련 계약서 (서명된 계약서 첨부)	MTA		BSA	

J. 허가 신청서 부록 목록 / 추가 정보

K. 서명

		C	C	Y	Y	M	M	D	D
프로젝트 책임자 서명	소속	날짜							

필요한 경우, 법인의 보증 서명을 추가하십시오.

		C	C	Y	Y	M	M	D	D
법인명	대표자 서명	날짜							

4. 생물탐사 허가(Bioprospecting permit)

-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모든 토착생물자원과 관련된 생물탐사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생물탐사 허가(Bioprospecting permit)를 받아야 함
 - 생물탐사 허가는 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토착생물자원의 수출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허가 신청 시, BABS규정 부속서 5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해당 토착생물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에 관하여 이해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 신청자와 이해당사자 간 작성한 물질이전계약서 및 이익 공유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 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NEMBA법 제82조 (4)(b)에 따라 이러한 합의를 위한 협상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환경부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음
- BABS규정 부속서 4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일단 납부하면 환불되지 않음

- 관련 법령 : NEMBA법 제81조, BABS규정 제17조
- 허가/신고 여부 :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허가
- 유효기간 : 최대 5년
- 제출서류 :

서류	서식
허가 신청서	BABS규정 부속서 5
이해당사자의 사전동의서	(서식 없음)
물질이전계약	BABS규정 부속서 11
이익공유계약	BABS규정 부속서 12

- 수수료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인 또는 자연인인 경우 R500~1,500,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인 또는 자연인이 아닌 경우 R7,500
→ BABS규정 부속서 4 참고

※ 외국인은 해당 허가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인 또는 자연인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

◆ 허가 신청서 서식

- 생물탐사 허가 신청서 서식은 생물무역 허가(Biotrade permit) 신청서 서식과 동일함

5. 생물무역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Integrated Biotrade and Bioprospecting permit)

-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모든 토착생물자원과 관련된 생물무역 및 생물탐사에 모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생물무역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Integrated Biotrade and Bioprospecting)를 받아야 함
 - 생물무역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는 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토착생물자원의 수출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허가 신청 시, BABS규정 부속서 5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해당 토착생물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에 관하여 이해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 신청자와 이해당사자 간 작성한 물질이전계약서 및 이익 공유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 물질이전계약 및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NEMBA법 제82조 (4)(b)에 따라 이러한 합의를 위한 협상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환경부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음
- BABS규정 부속서 4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일단 납부하면 환불되지 않음

- 관련 법령 : NEMBA법 제81조 및 BABS규정 제18조
- 허가/신고 여부 :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허가
- 유효기간 : 최대 5년
- 제출서류 :

서류	서식
허가 신청서	BABS규정 부속서 5
이해당사자의 사전동의서	(서식 없음)
물질이전계약	BABS규정 부속서 11
이익공유계약	BABS규정 부속서 12

- 수수료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인 또는 자연인인 경우 R500~1,500,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인 또는 자연인이 아닌 경우 R7,500
 - BABS규정 부속서 4 참고

※ 외국인인 해당 허가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인 또는 자연인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

◆ 허가 신청서 서식

- 생물무역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 신청서 서식은 생물무역 허가(Biotrade permit) 신청서 서식과 동일함

6. 생물탐사 외의 연구를 위한 수출 허가(Export permit for research other than bioprospecting)

-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물탐사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를 위해 토착생물자원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MEC*로부터 생물탐사 외의 연구를 위한 수출 허가(Export permit for research other than bioprospecting)를 받아야 함
 - * 생물다양성보전을 책임지는 주 집행위원회 소속 위원(Member of the Executive Council for environmental affairs)을 의미
- 허가 신청 시, BABS규정 부속서 3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해당 토착생물자원의 세부사항, 수량, 출처, 수출 목적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함
- BABS규정 부속서 4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일단 납부하면 환불되지 않음

- 관련 법령 : NEMBA법 제81조 및 BABS규정 제19조
- 허가/신고 여부 : MEC로부터 허가
- 제출서류 :

서류	서식
허가 신청서	BABS규정 부속서 3

- 수수료 : R200
 - BABS규정 부속서 4 참고

※ 외국인은 해당 허가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인 또는 자연인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

◆ 허가 신청서 서식

허가 유형(해당 항목에 표시)

신규			
갱신		허가 번호	
변경		허가 번호	

신청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1-5 문항에 답하시오.

1. 신청인 성명

--

2.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까?

Y	N
---	---

3. 2번 문항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시오.

[illegible]

4. 2번 문항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해당 국가명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시오.

[illegible]

5. 법인 정보

법인명		
담당자명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6. 담당자 정보(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첨부)

성명											
직책											
여권 번호(여권사본첨부)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 7-9 문항에 답하시오.

7. 신청인 정보

성명											
여권 번호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8. 신청인이 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Y	N
---	---

9. 8번 문항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 해당 법인 정보를 기재하시오.

법인명		
담당자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아래 부분은 신청인 전원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공동 연구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시오.

성명										
여권 번호(여권사본첨부)										
국적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성명										
여권 번호(여권사본첨부)										
국적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11. 연구를 수행할 사람의 정보를 기재하시오.

성명										
여권 번호(여권사본첨부)										
국적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프로젝트 후원인

12.1. 생물탐사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인 또는 외국인이 있습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인	Y	N
외국인	Y	N

12.2. 후원인 연락처를 기재하시오

성명										
담당자 성명										
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토착생물자원 수취인(수입자)

13. 수취인/수입자 정보

성명										
여권 번호(여권사본첨부)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주소						실제 주소				

토착생물자원

14. 해당 토착생물자원에 관한 상세정보를 기재하시오.

생물 유형	일반명 / 속명 / 종명	수집되는 부분	수량	지역 정보(가능하다면 지리 정보 포함)
Example: Plant	Aloe ferox	Leaves	6 kg	

이전 허가

15. 이 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토착생물자원과 관련하여 이전에 또는 동시에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대한 다른 허가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Y	N
---	---

16. 15번 문항에서 “예”라고 답변한 경우, 해당 허가는 발급, 거절, 진행 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17. 16번 문항에서 “발급”이라고 답변한 경우, 아래 표에 해당 허가증에 관하여 기재하고 발급된 허가서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허가	담당 기관	발급 일자

프로젝트 제안서

18. 이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제안서 세부 내용을 첨부하십시오.

- 연구의 목적
- 프로젝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 제안된 연구 방법
- 제안된 연구 일정(필요한 허가 유효기간)
- 자원 수집의 영향을 포함한 관련 환경 고려사항 및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제안 단계
- 보고 절차
- 프로젝트에서 원하는 결과
- 연구 종료 시 폐기하는 시료 처리 방법

수출의 목적

19. 토착생물자원을 수출하는 목적을 기재하십시오.

--

수수료

R200 수수료 납부 여부	
예	아니오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 영수증 첨부)	

신청인 서명

		C	C	Y	Y	M	M	D	D
프로젝트 책임자 서명	소속	날짜							

필요한 경우, 법인의 보증 서명을 추가하십시오.

		C	C	Y	Y	M	M	D	D
법인명	대표자 서명	날짜							

1. 허가 신청서/신고서 제출 방법

- ◆ 남아프리카공화국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에 필요한 허가 신청서 및 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음(BABS규정 제20조 제1항)
 - 이메일
 - 등기 우편
 - 일반 우편
 - 방문 접수
 - 팩스
 - 전자 제출

2. 허가 신청서/신고서 처리 기간

- ◆ 남아프리카공화국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에 필요한 허가 신청서 및 신고서를 수령하면, 담당 기관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허가 발급 또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함(BABS규정 제21조 제1항)
- ◆ (신청자가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담당 기관은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해당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함
 - 요청된 추가 정보가 해당 요청 후 30일 이내에 발행기관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됨
- ◆ 담당 기관이 12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허가 발급 또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기관은 120일(근무일 기준)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자에게 처리 기간을 30일(근무일 기준) 더 연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때 담당 기관이 120일(근무일 기준)의 처리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주어야 함
 - 30일(근무일 기준)의 추가 연장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관이 처리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위해 법원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 규정과 다르게 실무상으로는 120일의 처리 기간 및 30일의 연장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절차 소요 기간을 넉넉하게 계획하거나, 또는 처리 기간 미준수 시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방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

3. 허가 신청 수수료

- ◆ 남아프리카공화국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에 필요한 허가 신청 수수료는 BABS규정 부속서 4에 규정되어 있음

- ◆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법인 또는 자연인인 경우) 허가 신청 수수료

허가 유형	카테고리1	카테고리2		카테고리3		카테고리4		갱신	변경
발견단계 수출 허가	R50	R50		R50				R50	R50
생물탐사 외 연구 목적 수출	R200	R200		R200		R200		R200	R200
생물무역 허가	R500	R1,500	R2,500	R5,000	R7,500	R500	R1,500	50% 면제	75% 면제
생물탐사 허가	R500	R1,500	R2,500	R5,000	R7,500	R500	R1,500	50% 면제	75% 면제
생물무역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	R500	R1,500	R2,500	R5,000	R7,500	R500	R1,500	50% 면제	75% 면제

※ 1R = 81.21원(2019. 6. 23. 기준)

- 카테고리 1 : 과세 대상 연간 매출액이 R500~R300,000인 경우
- 카테고리 2 : 과세 대상 연간 매출액이 R300,001~R750,000인 경우 (발견단계 신고서 첨부 시 R1,000 할인)
- 카테고리 3 : 과세 대상 연간 매출액이 R750,000을 초과하는 경우 (발견단계 신고서 첨부 시 R2,500 할인)
- 카테고리 4 : 과학기술부 관보에서 지정한 모범 연구기관인 경우 (발견단계 신고서 첨부 시 R1,000 할인)

- ◆ (남아프리카공화국 외 법인 또는 자연인인 경우) 허가 신청 수수료

허가 유형	신규	갱신	변경
발견단계 수출 허가	R100	R100	R100
생물탐사 외 연구 목적 수출	R200	R200	R200
생물무역 허가	R7,000	50% 할인	75% 면제
생물탐사 허가	R7,500	50% 할인	75% 면제
생물무역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	R8,000	50% 할인	75% 면제

※ 1R = 81.21원(2019. 6. 23. 기준)

◆ (허가 신청 수수료 지급 방법) 허가 신청서 참조 번호를 받은 후, 다음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해야 함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ABSA Bank
Account number: 1044240072
Account type: Current
Branch code : 632005
Swift Account : ABSA ZAJJ CPT (outside SA)
Reference Number: 00946420 & Depositors Details (회사명 및 참조 번호)

◆ (허가 신청 수수료 지급 후) 다음 주소 중 하나로 입금 전표 사본을 우편배송 또는 전달해야 함

우편 주소(Postal Address)	실제 주소(Physical Addres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The Director-General	The Director-General
Attention: Director: Bioprospecting and Biodiversity Economy	Attention: Director: Bioprospecting and Biodiversity Economy
Environmental House	Environmental House
Private Bag X447	437 Steve Biko Road
PRETORIA	Arcadia
0001	0083

◆ (허가 신청 수수료 관련 문의) BABS@environment.gov.za

4.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

◆ 물질이전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NEMBA법 제84조 (1)항)

- 토착생물자원의 이해당사자, 수출자 또는 수취인 정보
- 제공되거나 접근할 수 있는 토착생물자원의 유형
- 토착생물자원을 수집, 획득 또는 제공하는 지역 또는 출처
- 제공, 수집, 획득 또는 수출하는 토착생물자원의 양
- 해당 토착 생물자원을 수출하는 목적
- 토착생물자원의 현재 잠재적 용도
- 수취인이 해당 토착생물자원 또는 그 후손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조건

◆ 물질이전계약의 체결(BABS규정 제38조)

- 물질이전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토착생물자원의 이용자 및 이해당사자, 그리고 NEMBA법 제82조 (1) (a)에 따른 이해당사자임
- 물질이전계약의 서식은 BABS규정 부속서 11의 형식으로 체결해야 함
- 물질이전계약의 이해당사자가 공동체인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물질이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 결의는 BABS규정 부속서 13을 따라야 함

※ 물질이전계약 또는 물질이전계약의 변경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음(NEMBA법 제84조 (2)항)

◆ 물질이전계약 서식

주의 :
1. 본 계약은 토착생물자원의 접근에 관한 법 규정에 따른 이해당사자와 허가 신청자가 체결해야 한다.
2. 이해당사자가 둘 이상일 경우, 각 이해당사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이 서식에 공간이 부족할 경우 부속서를 통해 추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를 갈음하여, 당사자들은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자체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서식은 이 본 서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계약서 내 표시된 곳과 부속서를 포함한 계약서의 모든 첫 장에 서명해야 한다.

물질이전계약

당사자

[회사 명]

[법적 주소]

[접근 제공자 대표 이름]이 대표하여

이하 '접근 제공자'라고 한다

당사자

[허가 신청인/수령인 대표자 이름]이 대표하여

이하 '허가 신청인/수령인'이라고 한다.

[회사 명]

[법적 주소]

접근 및 사전 동의

1. 수령인/허가 신청인은 [제품 개발 및/또는 제품 제조 또는 다른 조직으로의 재판매 또는 추가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 제공자로부터 토착생물자원의 [일부, 추출물 또는 기타 파생물]을 받는다.
2. 접근 제공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지방, 지역 명]에서 토착생물자원의 [일부, 추출물 또는 기타 파생물]을 수집/채취/양식한다.
3. 허가 신청인/수령인은 [국가 명]에서 위와 같은 토착생물자원의 [일부, 추출물 또는 기타 파생물]을 이용하여 [제품 명]을 [개발 및/또는 제조]한다.
4. 허가 신청인/수령인과 접근 제공자는 생물다양성 협약(CBD)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법(2004), 그리고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개정 규정(2015)의 정신에 따라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토착생물자원의 수령인/허가 신청인

1. 허가 신청인/수령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자연인]이다.

1.1. 관련 세부사항

1.1.1. 이름 : _____

1.1.2. 등록번호 : _____

1.1.3. 연락처 및 담당자 : _____

토착생물자원의 접근 제공자 (해당하는 경우)

2. 토착생물자원의 접근 제공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에 따라 등록된 [자연인 또는 토착 공동체]이다.

2.1. 관련 세부사항

2.1.1. 이름 : _____

2.1.2. 연락처, 담당자 직책 및 이름 : _____

토착생물자원

3. 수령인/허가 신청인은 접근 제공자로부터 제10조에 열거된 토착생물자원의 [일부, 추출물 또는 기타 파생물]을 받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4. 본 계약의 조건은 제10조에 열거된 토착생물자원의 [일부, 추출물 또는 기타 파생물]과 의도치 않게 함께 이전되는 그 외 토착생물자원, 그리고 토착생물자원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모든 유전 물질, 생물학적 분자와 생화학 화합물을 포함한다.

권리와 의무

5. 수령인/허가 신청인은 접근 제공자가 제공하는 토착생물자원을 [제품 개발 및/또는 제조 또는 다른 조직에 대한 재판매/기타 상업적 이용]을 위한 원료로서만 사용해야 한다.
6. 수령인/허가 신청인은 생물다양성법(2014) 및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개정 규정(2015)을 준수하고 담당기관의 사전 통지 및 서면 허가가 있는 경우, [토착생물자원의 새로운 활용 방법 또는 토착생물자원의 준비, 생산 또는 제조를 위한 새로운 과정에 관하여] 토착생물자원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만을 주장할 수 있다.
7. 수령인/허가 신청인은 접근 제공자와 함께 토착생물자원의 이용에 있어 제안된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사전 동의를 받고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한 후에 한하여, 토착생물자원의 새롭고 유용한 특성과 연계된 연구 개발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토착생물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8. 수령인/허가 신청인은 담당 기관 및 접근 제공자의 사전 동의 및 상호합의 없이 [발아, 전파, 번식, 조직 번식, 복제 또는 기타 재생산 목적의 유전 물질 활용] 목적으로 토착생물자원을 이용할 수 없다.

제3자 이전

9. 수령인/허가 신청인은 새로운 수령인/허가 신청인이 본 계약과 동등한 조건에 구속된다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토착생물자원을 판매, 이전하거나 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토착생물자원

10. 본 계약에 관한 토착생물자원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토착생물자원의 학명 및 일반명(예: 식물, 동물, 미생물, 유전물질, 파생물)
- 수집/활용되는 자원의 상태 혹은 부분
- 필요한 수량
- 자원이 수집되는 지역에 관한 정보

학명 및 일반명	이용되는 부분	물리적 상태	수량	지역 / 원산지 정보
Aloe ferox Bitter aloe	Sap from leaves	Crystals	100 kg	xxS ## E Mosselbaai

토착생물자원의 접근 목적

11. 토착생물자원의 접근 목적은 다음과 같다 : _____

완전 합의

12. 본 계약은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의 전체 계약을 구성하며,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가 서면으로 서명하고 이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 또는 권리 포기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13. 본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의 사본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위반 및 종료

14. 본 계약의 당사자(“위반 당사자”)가 본 계약의 중요한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피해 당사자”)은 위반 당사자에게 수령 후 3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 위반 당사자가 통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조항 위반을 지속하는 경우, 피해 당사자는 (본 계약 또는 법률에 따른 그 밖의 권리 또는 구제책 외에도)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4.1. 본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기간과 관계 없이 특정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
- 14.2. 피해 당사자에게 예상되는 특정 결과나 손해를 막지 못할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권리

서명

		C	C	Y	Y	M	M	D	D
접근 제공자 이름	직책	날짜							

		C	C	Y	Y	M	M	D	D
허가 신청인/수령인 이름	직책	날짜							

법인 보증(해당하는 경우)

		C	C	Y	Y	M	M	D	D
법인명	책임자 서명	날짜							

환경부 장관 승인

		C	C	Y	Y	M	M	D	D
서명	날짜								

5. 이익공유계약(Benefit sharing agreement)

◆ 이익공유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NEMBA법 제83조 (1)항)

- 해당 생물탐사와 관련된 토착생물자원의 유형
- 토착생물자원을 수집, 획득 또는 제공하는 지역 또는 출처
- 수집하거나 획득할 토착생물자원의 양
- 토착공동체에서 사용하는 토착 생물자원의 전통적인 용도
- 토착생물자원의 현재 잠재적 용도
- 이익공유계약의 당사자
- 생물탐사 등 토착생물자원이 이용될 방법과 범위
- 생물탐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이익을 이해당사자가 공유할 방법과 범위
- 생물탐사 진행 과정에 관한 당사자 간 정기 보고
- 규정된 기타 사항 준수

◆ 이익공유계약의 체결(BABS규정 제39조)

- 이익공유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토착생물자원 또는 토착생물자원에 관한 전통지식의 이용자 및 이해당사자, 그리고 NEMBA법 제82조 (1) (a) 및 (b)에 따른 이해당사자임
- 이익공유계약의 서식은 BABS규정 부속서 12의 형식으로 체결해야 함
- 이익공유계약의 이해당사자가 토착공동체인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물질이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 결의는 BABS규정 부속서 13을 따라야 함

※ 이익공유계약 또는 이익공유계약의 변경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음(NEMBA법 제83조 (2)항)

◆ 이익공유계약 서식(토착생물자원인 경우)

주의 :

1. 본 계약은 토착생물자원 및/또는 토착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에 관한 법 규정에 따른 이해당사자와 허가 신청자가 체결해야 한다.
2. 이해당사자가 둘 이상일 경우, 각 이해당사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이 서식에 공간이 부족할 경우 부속서를 통해 추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를 갈음하여, 당사자들은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자체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서식은 이 본 서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계약서 내 표시된 곳과 부속서를 포함한 계약서의 모든 첫 장에 서명해야 한다.

이익공유계약(토착생물자원인 경우)

당사자

[회사 명]

[법적 주소]

[접근 제공자 대표 이름]이 대표하여

이하 '접근 제공자'라고 한다.

당사자

[수령인/허가 신청인 대표자 이름]이 대표하여

이하 '수령인/허가 신청인'이라고 한다.

[회사 명]

[법적 주소]

토착생물자원의 수령인/허가 신청인

1. 허가 신청인/수령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자연인]이다.
 - 1.2. 관련 세부사항
 - 1.2.1. 이름 : _____
 - 1.2.2. 등록번호 : _____
 - 1.2.3. 연락처 및 담당자 : _____

토착생물자원의 접근 제공자 (해당하는 경우)

2. 토착생물자원의 접근 제공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에 따라 등록된 [자연인 또는 토착 공동체]이다.
- 2.1. 관련 세부사항
- 2.1.1. 이름 : _____
- 2.1.2. 연락처, 담당자 직책 및 이름 : _____
- 2.2.2. 대표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표자 명 : _____

토착생물자원

3. 본 계약에 관한 토착생물자원 정보는 다음과 같다 :
- 토착생물자원의 학명 및 일반명(예: 식물, 동물, 미생물, 유전물질, 파생물)
 - 수집/활용되는 자원의 상태 혹은 부분
 - 필요한 수량
 - 자원이 수집되는 지역에 관한 정보

학명 및 일반명	이용되는 부분	물리적 상태	수량	지역 / 원산지 정보
Aloe ferox Bitter aloe	Sap from leaves	Crystals	100 kg	xxS ## E Mosselbaai

이익 공유

4. 비금전적, 금전적 또는 기타 이익 공유

주의 : 이익은 사례별로 다양하게 발생할 것이며 특히 사업의 성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이 달라진다. 아래 목록은 생물탐사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의 예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계약에 적용되는 항목을 선택하고 선택한 이익에 대한 세부 정보를 부록 형식으로 첨부하도록 한다.

- 4.1. 토착생물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여 [접근 제공자 이름]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 :

비금전적, 금전적 또는 기타 이익			
자원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지		국가 연구기관과 함께 시료 채취	
연구 결과 및 보고서 사본 제공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의 연구 참여	
보존을 위한 지원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의 해외 수집 접근	

해당 종 목록 생성	전통지식 및 그 이용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학생 교육 및 지원	지역공동체 개발 프로젝트	
과학 능력 개발	환경 교육	
기술 이전	수수료	
합동 연구	로열티	
정부	선급금 지급	
장비 및 인프라	마일스톤 지급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기타 금전적 이익 (구체적으로 기재)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이익 지급

5. 본 계약에 따라 접근 제공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이익은 수수료/요금 지불을 제외한 전액을 생물탐사 신탁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 이익공유계약은 토착생물자원의 접근 제공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적 이익이 공공재무관리법에 따른 신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한다.

본 계약의 재검토

6. 본 계약은 _____(합의된 기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한다.
- 모든 검토가 있기 1개월 전에, 허가 보유자는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생물무역/생물탐사와 관련된 모든 새로운 중요 정보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 받은 정보를 토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자 이전

7. 수령인/허가 신청인은 접근 제공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착생물자원을 이전할 수 없으며, 오직 본 계약에 따른 접근 제공자의 법적 구속력 있는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착 생물자원을 이전할 수 있다.

기타 문제

8. 본 계약 당사자들이 기록하고자 하는 기타 문제 또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_____

주의 : 본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계약의 사본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계약은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의 전체 계약을 구성하며,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가 서면으로 서명하고 이를 30일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 또는 권리 포기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 위반 및 종료

9. 본 계약의 당사자(“위반 당사자”)가 본 계약의 중요한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피해 당사자”)은 위반 당사자에게 수령 후 3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 위반 당사자가 통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조항 위반을 지속하는 경우, 피해 당사자는 (본 계약 또는 법률에 따른 그 밖의 권리 또는 구제책 외에도)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9.1. 본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기간과 관계 없이 특정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
- 9.2. 피해 당사자에게 예상되는 특정 결과나 손해를 막지 못할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권리

서명

		C	C	Y	Y	M	M	D	D
접근 제공자 이름	직책	날짜							

법인 보증(해당하는 경우)

		C	C	Y	Y	M	M	D	D
법인명	책임자 서명	날짜							

		C	C	Y	Y	M	M	D	D
허가 신청인/수령인 이름	직책	날짜							

환경부 장관 승인

	C	C	Y	Y	M	M	D	D
서명	날짜							

◆ 이익공유계약 서식(전통지식인 경우)

주의 :

1. 본 계약은 토착생물자원 및/또는 토착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에 관한 법 규정에 따른 이해당사자와 허가 신청자가 체결해야 한다.
2. 이해당사자가 둘 이상일 경우, 각 이해당사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이 서식에 공간이 부족할 경우 부속서를 통해 추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를 같음하여, 당사자들은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자체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서식은 이 본 서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계약서 내 표시된 곳과 부속서를 포함한 계약서의 모든 첫 장에 서명해야 한다.

이익공유계약(전통지식인 경우)

당사자

[회사 명]

[법적 주소]

[전통지식 보유자 대표 이름]이 대표하여

이하 '전통지식 보유자'라고 한다.

당사자

[허가 신청인/수령인 대표자 이름]이 대표하여

이하 '허가 신청인'이라고 한다.

[회사 명]

[법적 주소]

토착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 이용자/허가 신청인

1. 허가 신청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자연인]이다.

1.1. 관련 세부사항

1.1.1. 이름 : _____

1.1.2. 등록번호 : _____

1.1.3. 연락처 및 담당자 : _____

토착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유자

2. 토착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유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에 따라 등록된 [자연인 또는 토착 공동체]이다.

2.1. 관련 세부사항

2.1.1. 이름 : _____

2.1.2. 연락처, 담당자 직책 및 이름 : _____

2.2.2. 대표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표자 명 : _____

토착공동체가 토착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보유한 경우

3. [토착공동체 / 개인 / 협회 / 조직]의 이름 : _____

3.1. 관련 세부사항

3.1.1. 이름 : _____

3.1.2. 연락처, 담당자 직책 및 이름 : _____

3.2.2. 대표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표자 명 : _____

토착생물자원

4. 본 계약에 관한 토착생물자원 정보는 다음과 같다 :
 - 토착생물자원의 학명 및 일반명(예: 식물, 동물, 미생물, 유전물질, 파생물)
 - 수집/활용되는 자원의 상태 혹은 부분
 - 필요한 수량
 - 자원이 수집되는 지역에 관한 정보

학명 및 일반명	이용되는 부분	물리적 상태	수량	지역 / 원산지 정보
Aloe ferox Bitter aloe	Sap from leaves	Crystals	100 kg	xxS ## E Mosselbaai

토착생물자원의 전통적 이용

5. 제4조에서 열거한 토착생물자원의 전통적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_____

이익 공유

6. 비금전적, 금전적 또는 기타 이익 공유

주의 : 이익은 사례별로 다양하게 발생할 것이며 특히 사업의 성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이 달라진다. 아래 목록은 생물탐사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의 예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계약에 적용되는 항목을 선택하고 선택한 이익에 대한 세부 정보를 부록 형식으로 첨부하도록 한다.

6.1. 토착생물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여 [전통지식 보유자 이름]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 :

비금전적, 금전적 또는 기타 이익		
지역 언어로의 번역을 통한 생물탐사의 목적, 방법, 및 성과에 관한 지속적인 의사소통	제안서, 보고서 및 출판물의 사본	
지역 언어로 번역된 간단하고 대중화된 포스터, 설명서, 팸플릿 및 기타 문서	전통지식 및 그 이용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출판물에 관한 공동 저작권	시료 채취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	개발 및 환경 교육 사업 지원금	
사진 및 슬라이드 자료 사본	수수료(예를 들어 상담, 지원, 가이드, 시설 및 인프라 사용 관련)	
지역 협력자, 보조자, 가이드 및 정보 제공자의 연구 참여	로열티	
관련 과학, 법학, 경영 문제에 관한 지역 주민 훈련	선금금 지급	
장비 및 인프라 지원	마일스톤 지급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기타 금전적 이익 (구체적으로 기재)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이익 지급

7. 본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이익은 수수료/요금 지불을 제외한 전액을 생물탐사 신탁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 이익공유계약은 토착생물자원의 전통지식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적 이익이 공공재무관리법에 따른 신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한다.

본 계약의 재검토

8. 본 계약은 _____(합의된 기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한다

모든 검토가 있기 1개월 전에, 허가 보유자는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생물무역/생물탐사와 관련된 모든 새로운 중요 정보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 받은 정보를 토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자 이전

9. 허가 신청인은 전통지식 보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통지식을 이전할 수 없으며, 오직 본 계약에 따른 전통지식 보유자의 법적 구속력 있는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통지식을 이전할 수 있다.

기타 문제

10. 본 계약 당사자들이 기록하고자 하는 기타 문제 또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_____

주의 : 본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계약의 사본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계약은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의 전체 계약을 구성하며,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가 서면으로 서명하고 이를 30일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 또는 권리 포기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 위반 및 종료

11. 본 계약의 당사자(“위반 당사자”)가 본 계약의 중요한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피해 당사자”)은 위반 당사자에게 수령 후 3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 위반 당사자가 통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조항 위반을 지속하는 경우, 피해 당사자는 (본 계약 또는 법률에 따른 그 밖의 권리 또는 구제책 외에도)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1.1. 본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기간과 관계 없이 특정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
- 11.2. 피해 당사자에게 예상되는 특정 결과나 손해를 막지 못할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권리

서명

		C	C	Y	Y	M	M	D	D
전통지식 보유자 이름	직책	날짜							

법인 보증(해당하는 경우)

		C	C	Y	Y	M	M	D	D
법인명	책임자 서명	날짜							

		C	C	Y	Y	M	M	D	D
허가 신청인 이름	직책	날짜							

환경부 장관 승인

		C	C	Y	Y	M	M	D	D
서명	날짜								

6. 담당자 연락처

구분	담당기관	관련 정보
국가 정부	환경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담당부서 : BABS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주소 : Environmental House, 437 Steve Biko Road, Arcadia, Pretoria Pretoria, Gauteng Province Arcadia, South Africa 전화 : +27 12 399 9611/8917/9612/9590 팩스 : +27 12 359 3636 이메일 : lmabadahane@environment.gov.za 웹사이트 : http://www.environment.gov.za
주 정부	Eastern Cape	담당부서 :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Affairs 주소 : Private Bag X 0054, Bhisho, 5605 전화 : +27 043 605 8000 웹사이트 : http://www.dedea.gov.za
	Free State	담당부서 :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Tourism and Environmental Affairs 주소 : Private Bag X 20801, Bloemfontein, 9300 전화 : +27 051 400 4731/9600 웹사이트 : www.detea.fs.gov.za
	Gauteng	담당부서 :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Environmental Affairs PO Box 8769, Johannesburg, 2000 전화 : +27 011 355 1900 웹사이트 : http://www.gdard.gpg.gov.za
	Limpopo	담당부서 :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 and Tourism 주소 : Private Bag X 9484, Polokwane, 0700 전화 : +27 015 293 8564/8300 이메일 : info@ledet.gov.za 웹사이트 : http://www.ledet.gov.za
	Mpumalanga	담당부서 :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 and Tourism 주소 : Private Bag X 11215, Nelspruit, 1200 전화 : +27 013 766 4179/4004 웹사이트 : http://www.mpumalanga.gov.za/dedet
	Northern Cape	담당부서 :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e Conservation 주소 : Private Bag X 6120, Kimberley, 8301 전화 : +27 053 807 7306/7300 웹사이트 : http://denc.ncpg.gov.za
	North West	담당부서 :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Tourism 주소 : Private Bag X 2039, Mmabatho, 2735 전화 : +27 018 389 5146/5104/5111 웹사이트 : http://www.nwpg.gov.za

→ 담당자가 변경될 수 있음

III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전자원 접근신청 이후 절차

- | | |
|------------------------------|----|
| 1. 유전자원 접근신청 이후 절차 | 70 |
| 2. 유전자원 관련 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 변경 | 72 |
| 3.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 발급 | 72 |
| 4. 국내 이행준수 절차 | 74 |



유전자원 접근신청 이후 절차

1. 발견 단계 신고 이후 절차

◆ 발견 단계 신고의 등록(BABS규정 제29조)

- 신고인이 BABS규정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한 경우, 담당 기관은 신고인이 제출한 발견 단계 신고를 등록하게 됨
- (특정 조건을 붙여 발견 단계 신고를 등록한 경우) 담당 기관은 신고인이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신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
- (발견 단계 신고 등록을 거절한 경우) 담당 기관은 신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함

◆ 발견 단계 신고 등록 후 조치(BABS규정 제30조)

- 신고인은 생물탐사의 발견 단계에 관한 현황 보고서를 담당 기관이 정한 형식에 따라 매년 또는 담당 기관이 정한 기간마다 제출해야 함
- 신고인은 생물탐사의 발견 단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음

2. 발견 단계 수출/생물무역/생물탐사/생물무역 및 생물탐사 통합/생물탐사 외의 연구를 위한 수출 허가 이후 절차

◆ 허가 발급(BABS규정 제31조)

- 신청인이 BABS규정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한 경우 담당 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한 허가를 발급함
- (특정 조건을 붙여 허가를 발급한 경우) 담당 기관은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
- (허가 발급을 거절한 경우) 담당 기관은 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함

◆ 발견 단계 수출 허가 발급 후 조치(BABS규정 제33조 (1)항)

- 허가 보유자는 생물탐사의 발견 단계에 관한 현황 보고서를 담당 기관이 정한 형식에 따라 매년, 격년 또는 담당 기관이 정한 기간마다 제출해야 함
- 허가 보유자는 생물탐사의 발견 단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음
- 허가 보유자는 담당 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해당 허가과 관련된 토착생물자원을 제3자에게 판매, 기증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생물무역 허가 발급 후 조치(BABS규정 제33조 (2)항)

- 이익공유계약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지급할 돈은 전액 생물탐사 신탁 기금에 납부되어야 함
- 허가 보유자는 이익공유계약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지급할 돈이 생물탐사 신탁 기금에 납부하면, 이 사실을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함
- 허가 보유자는 이해당사자에게 이익공유계약에 따른 금전적 이익을 생물탐사 신탁 기금에 납부한 사실을 통지해야 함
- 허가 보유자는 현황 보고서를 담당 기관이 정한 형식에 따라 매년 또는 담당 기관이 정한 기간마다 제출해야 함
- 허가 보유자는 생물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생물탐사 허가 발급 후 조치(BABS규정 제33조 (3)항)

- 이익공유계약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지급할 돈은 전액 생물탐사 신탁 기금에 납부되어야 함
- 허가 보유자는 이익공유계약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지급할 돈이 생물탐사 신탁 기금에 납부하면, 이 사실을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함
- 허가 보유자는 이해당사자에게 이익공유계약에 따른 금전적 이익을 생물탐사 신탁 기금에 납부한 사실을 통지해야 함
- 허가 보유자는 현황 보고서를 담당 기관이 정한 형식에 따라 매년 또는 담당 기관이 정한 기간마다 제출해야 함
- 허가 보유자는 담당 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해당 허가과 관련된 토착생물자원을 제3자에게 판매, 기증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허가 보유자는 생물탐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생물무역 및 생물탐사 허가 발급 후 조치(BABS규정 제33조 (4)항)

- 이익공유계약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지급할 돈은 전액 생물탐사 신탁 기금에 납부되어야 함
- 허가 보유자는 이익공유계약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지급할 돈이 생물탐사 신탁 기금에 납부하면, 이 사실을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함
- 허가 보유자는 이해당사자에게 이익공유계약에 따른 금전적 이익을 생물탐사 신탁 기금에 납부한 사실을 통지해야 함
- 허가 보유자는 현황 보고서를 담당 기관이 정한 형식에 따라 매년 또는 담당 기관이 정한 기간마다 제출해야 함
- 허가 보유자는 담당 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해당 허가과 관련된 토착생물자원을 제3자에게 판매, 기증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허가 보유자는 생물무역 및 생물탐사 통합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생물탐사 외의 연구를 위한 수출 허가 발급 후 조치(BABS규정 제33조 (5)항)

- 해당 허가과 관련된 토착생물자원은 허가에 명시된 비상업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
- 해당 허가과 관련된 토착생물자원은 생물탐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허가 보유자는 토착생물자원 수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음
- 허가 보유자는 담당 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해당 허가과 관련된 토착생물자원을 제3자에게 판매, 기증 또는 이전할 수 없으며, 제3자는 토착생물자원을 생물탐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허가 보유자는 현황 보고서를 담당 기관이 정한 형식에 따라 매년 또는 담당 기관이 정한 기간마다 제출해야 함

유전자원 관련 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 변경

- ◆ 모든 허가는 해당 허가증에 명시된 기간 동안만 유효함
 - 발견 단계 수출/생물탐사 외의 연구를 위한 수출 허가는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
 - 생물무역/생물탐사/생물무역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는 그 유효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허가의 갱신 또는 변경 신청(BABS규정 제35조)
 - 허가 보유자는 허가 만료일 전에 해당 허가서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음
 - 허가 보유자는 첫 번째 연간 사업 현황 보고 이후 언제든지 해당 허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허가의 갱신 또는 변경 신청 시에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허가의 갱신 또는 변경이 거절되면,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결정을 통지해야 하고, 신청자가 요구할 경우, 거절된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이 이의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 발급

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제의무준수인증서 발급 현황

-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9년 6월 기준(2016.3.23.~2019.6.4.)* 총 28개의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를 발급
 - * 동 기간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CBD ABS정보공유체계(ABSCH)에 공표한 일자 기준임

날짜	목적	등록 코드
2019. 6. 4.	비상업	ABSCH-IRCC-ZA-246483-1
2019. 2. 11.	비상업	ABSCH-IRCC-ZA-241926-1
2019. 2. 8.	상업	ABSCH-IRCC-ZA-241923-1
2019. 2. 8.	상업	ABSCH-IRCC-ZA-241922-1
2018. 2. 14.	상업	ABSCH-IRCC-ZA-239441-1
2018. 2. 14.	상업	ABSCH-IRCC-ZA-239440-1
2018. 2. 14.	상업	ABSCH-IRCC-ZA-239439-1
2018. 2. 14.	상업	ABSCH-IRCC-ZA-239438-1
2018. 2. 14.	상업	ABSCH-IRCC-ZA-239437-1
2018. 2. 6.	상업	ABSCH-IRCC-ZA-239339-2
2018. 2. 6.	상업	ABSCH-IRCC-ZA-2393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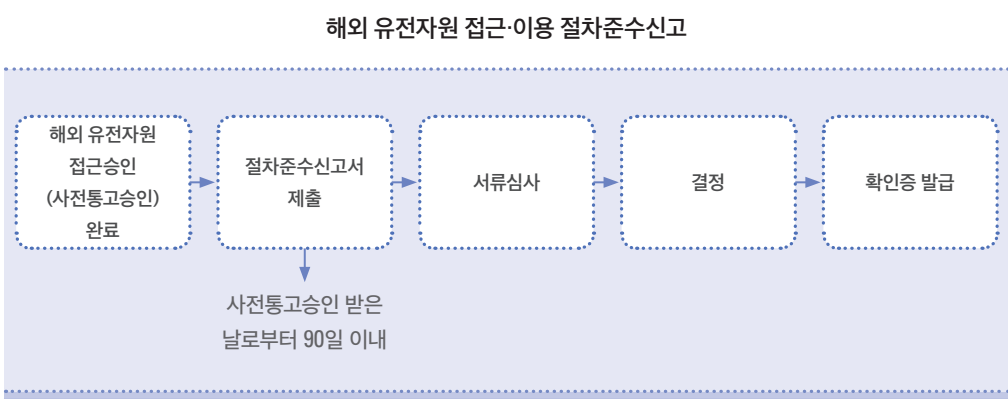
2018. 2. 6.	상업	ABSCH-IRCC-ZA-239342-1
2018. 2. 6.	상업	ABSCH-IRCC-ZA-239341-1
2018. 2. 6.	상업	ABSCH-IRCC-ZA-239340-1
2018. 2. 6.	상업	ABSCH-IRCC-ZA-239338-1
2018. 2. 6.	상업	ABSCH-IRCC-ZA-239337-1
2018. 2. 6.	상업	ABSCH-IRCC-ZA-239336-1
2018. 2. 6.	상업	ABSCH-IRCC-ZA-239335-1
2018. 2. 6.	상업	ABSCH-IRCC-ZA-239334-1
2017. 11. 8.	상업	ABSCH-IRCC-ZA-238277-2
2017. 7. 14.	상업	ABSCH-IRCC-ZA-238279-1
2017. 7. 14.	상업	ABSCH-IRCC-ZA-238278-1
2017. 7. 14.	상업	ABSCH-IRCC-ZA-238276-1
2017. 7. 14.	상업	ABSCH-IRCC-ZA-238275-1
2017. 7. 14.	상업	ABSCH-IRCC-ZA-238274-1
2017. 6. 23.	상업	ABSCH-IRCC-ZA-237653-1
2016. 11. 10.	상업	ABSCH-IRCC-ZA-208241-1
2016. 3. 23.	상업	ABSCH-IRCC-ZA-206780-1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제의무준수인증서 분석

-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제의무준수인증서 분석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제의무준수인증서는 2019년 6월 기준 총 28개이며, 이 중 26개가 상업 목적으로 유전 자원/전통지식 접근 허가를 신청한 것임
 - 국제의무준수인증서 발급 건 28개 중 신청인이 기업 또는 산업계인 경우는 17건이고, 학계 또는 연구기관인 경우는 11건임
 - 상업 목적의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유전자원은 주로 의약품/화장품/식품 연구 개발을 위해 사용됨
 - 상업 목적의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허가의 유효기간은 최대기간인 5년으로 하여 신청하고 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신청 승인을 받고 국내로 수입/수입하는 경우, 국내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이하와 같음

1. 해외 유전자원 등의 접근·이용에 대한 절차준수신고



◆ 절차준수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유전자원법 제15조)

절차준수신고 대상	•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 • 단,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제공국의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유전자원법 제15조
제출서류	• (필수)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준수신고서, 사전통고승인 증명서 • (추가)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신분(소속) 확인 증명 *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6호서식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성명(대표자) 홍길동	② 소속(법인명) (주)서울의약품		
	③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11-11-11111	④ 연락처 (전 화번호) 02-999-9999 (전 자우편) seoulmed@co.kr		
	⑤ 주소(사업장의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주)서울의약품			
유전자원 제공자	⑥ 성명(대표자) Adam Smith	⑦ 소속(법인명) Indigenous Group		
	⑧ 국가명 남아프리카공화국 (Republic of South Africa)	⑨ 연락처 (전 화번호) +27 12 399 9611/8917/9612/9590 (전 자우편) BABS@environment.gov.za		
	⑩ 주소(사업장의 소재지) Indigenous Group 473 Steve Biko Road, Pretoria, Gauteng Province, 0083, South Africa			
사전통고 승인	발급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Republic of South Africa)	발급 기관 환경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승인번호 South Africa/M.RA/ NEMA/NEMBA/BABS/NE MPAA/SBSPA/PPSA/NEM CMA/RES2019/DEA	승인날짜 2019년 1월 1일
	⑪ 유전자원의 명칭(해당 생물종의 학명 및 일반명) (학명: Chlorophytum borivilianum / 일반명: Musli)			
유전자원 및 이용	⑫ 용도 [√] 상업적 [] 비상업적		⑬ 수량 또는 농도(] 전통지식)	
	⑭ 목적 [√] 상업적 [] 비상업적		⑮ 용도 [√] 의약품 [] 화장품용 [] 원예용 [] 기타()	
	⑯ 이익 공유 합의의 체결 여부 [√] 합의 [] 미합의		⑰ 미체결 사유	
	⑱ 이익 공유 합의의 내용(합의한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 금전적 이익 공유 [] 비금전적 이익 공유 [√] 제3자 추후 이용에 관한 조건 [] 사용목적 변경에 관한 조건 [√] 이용자와 제공자 간 보고 또는 정보 공유 조건 []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준거법 및 대안적 분쟁 해결책(조정, 중재 등) [] 기타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6월 1일		신고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소관 국가점검기관의 장)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1부(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국가점검기관의 장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가점검기관의 장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고인이 법인일 경우 ①란에는 대표자명을, ②란에는 법인명을, ③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⑤란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제공자가 법인일 경우 ④란에는 대표자명을, ⑦란에는 법인명을, ⑩란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⑪ 유전자원의 명칭란에는 특정 유전자원의 명칭이 있을 경우 그 명칭과 함께 해당 생물종의 학명과 일반명을 적고, 특정 유전자원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생물종의 학명과 일반명만을 적습니다.
4. ⑫ 수량 또는 농도란에는 접근한 유전자원의 수량 또는 농도를 적고, 전통지식에 접근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 표를 합니다.
5. ⑬ 목적란, ⑭ 용도란은 복수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6. ⑮ 미체결 사유란에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익 공유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7. ⑯ 이익 공유 합의의 내용란에는 합의에 포함된 해당 내용이 있을 경우 √ 표를 합니다. 이 경우 복수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IV

결론

1. 남아프리카공화국

80



남아프리카공화국

1. 유전자원 접근 절차의 특징

- ◆ 일반적인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률과 달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 절차는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함
- ◆ 외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전자원/전통지식에 접근하려면 사전통고승인(PIC)과 같은 절차를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과 공동으로 진행해야 함
- ◆ 따라서 외국인은 단독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국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2. 이익 공유의 특징

-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 절차는 물질이전계약과 이익공유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이 때 각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까지도 법규정을 통하여 강제하고 있음
-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 절차 시 소요되는 수수료를 해당 신청인의 과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전자원/전통지식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생물탐사 신탁 기금에 전액 귀속되게 하는 등 정부 당국에서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 절차에서 발생하는 금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이 눈에 띄는 특징임
- ◆ 위와 같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 절차에 따른 특이사항을 통하여, 유전자원/전통지식을 국가 차원에서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또는 이익공유 등을 통해 국가 재원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태도를 엿볼 수 있음
-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전자원/전통지식을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 중 금전적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금원은 제공자/전통지식 보유자가 아니라 생물탐사 신탁 기금에 전액 납부해야 함
- ◆ 따라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전자원/전통지식 이용자는 제공자/전통지식 보유자와 체결한 이익공유계약에 따라 공유해야 하는 금전적 이익을 생물탐사 신탁 기금에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즉시 그 사실을

신탁 기금 담당자와 제공자/전통지식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 즉,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전자원/전통지식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제공자가 아니라 생물탐사 신탁 기금에 전액 귀속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부록

부록 1

남아프리카공화국 ABS 관련 법률 : 84
생물다양성법(2004)

부록 2

남아프리카공화국 ABS 관련 법률 : 85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규정(2015)



남아프리카공화국 ABS 관련 법률 : 생물다양성법(2004)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iodiversity Act, 2004)

-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한 후, “환경관리법(1998)”(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Act of 107 of 1998)을 제정
-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04년 6월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일반법인 ‘생물다양성법(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iodiversity Act, 이하 “NEMBA법”)’을 제정
 - NEMBA법은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토착생물자원에 대한 생물다양성의 탐사를 규제하고 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NEMBA법은 특정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물질이전 및 이익공유의 요건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생물탐사 신탁기금을 설립하며, 특정 활동이나 토착생물자원의 법률 면제를 제공함
 - NEMBA법에 따르면, 그 누구도 허가 없이는 토착생물자원과 관련된 생물탐사의 상업화 단계에 관여하거나 생물탐사나 연구를 위한 토착생물자원을 수출할 수 없음
 - 또한 상업적 목적인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기 이전에는 원주민의 유전적, 생물학적 자원과 관련된 생물탐사의 발견 단계에 관여할 수 없으며, 발견 단계에서 생물탐사에 관련된 사람이 이를 이용한 상업화 단계에 도달하는 경우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함

남아프리카공화국 NEMBA법의 주요 내용

조항	내용
제1~9조	정의, 목적, 적용범위 등
제10~36조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 생물다양성 기관
제37~50조	생물다양성 계획 및 통제
제51~63조	위협 또는 보호받는 생태계 및 생물종
제64~79조	생물다양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
제80~86조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제87~96조	사전통고승인 절차
제97~100조	이 법의 집행
제101~102조	벌칙
제103~106조	기타 조항

→ 생물다양성법(2004)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https://www.abs.go.kr>) 자료실 참조

남아프리카공화국 ABS 관련 법률 :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규정(2015)
(Regulations on Bio-Propec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 2015)

-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NEMBA법의 하위 규정으로서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on Bio-Propec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 이하 “BABS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BABS규정은 생물탐사 목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 시 NEMBA법에 따른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음
- ◆ BABS규정은 2015년에 개정되어 같은 해 5월 19일 발효됨
 - BABS규정이 개정되면서 생물탐사의 발견 단계에서의 신고 절차 및 생물탐사가 아닌 다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토착생물자원의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됨
 - 또한 물질이전 및 이익공유 협정의 형식과 내용, 요건 및 기준, 생물탐사 신탁 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도 추가됨

남아프리카공화국 BABS규정의 주요 내용

조항	내용
제1~3조	정의, 목적, 적용범위
제4~11조	허가 담당 기관
제12~37조	생물탐사 및 그 외 연구에 대한 허가 절차
제38~40조	물질이전계약, 이익공유계약 및 생물탐사 신탁 기금
제41~43조	일반 문제
제44~46조	경과 규정

→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규정(2015)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https://www.abs.go.kr>) 자료실 참조

발행처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발행일	2019년 11월
기획	안세창, 이제훈, 박찬호, 이상준, 김윤정
집필	문선훈(법무법인 통인), 허인(한국지식재산연구원)
디자인	베이스라인(www.baseline.co.kr)
인쇄	꿈드래
ISBN	9788968113918(94360)
발간등록번호	11-1480592-001520-01

